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4. 10. 26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94. 11. 15
- 라. 상징빛의결일자 : '94. 11. 1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93년도 부천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라.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예산불용액이 만성화되고 있는 듯한 현상은 예산집행의 부실화를 초래케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은?		○ 예산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불가피한 이유의 사업집행 연기, 공기의 지연, 집행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309
의 결 년 월 일	94. 11. 19 (제32회)

제출년월일 : 1994. 10.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호(결산)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 승인근거

1.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주요골자

'93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93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총괄설명]

1.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총괄결산은

○ 세입예산액 449,531,9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644,195,097원이며

○ 세출예산액 485,345,183,570원(전년도 이월금 35,813,283,57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180,429,37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1,463,765,72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21,463,765,72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040,186,710원
- 사고이월 40,080,033,642원
- 계속비이월 13,447,395,230원
- 보조금집행잔액 359,316,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3,536,833,465원이다.

2. 1993년도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166,932,35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897,588,700원이며,

○ 세출예산액 186,786,859,330원(전년도 이월금 19,854,508,33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537,618,95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7,359,969,7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7,359,969,75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51,447,210원
- 사고이월 10,233,479,580원
- 계속비이월 13,447,395,23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75,004,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852,643,620원이다.

3.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75,973,68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701,518,35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1,932,460,240원(전년도 이월금 15,958,775,24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6,898,374,7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7,803,143,6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7,803,143,65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1,453,739,500원

• 사고이월 10,876,397,33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5,396,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개잉여금은 5,447,610,100원이다.

4. 19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관건산상황

○ 세입예산액 282,599,54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1,746,606,39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98,558,324,240원(전년도 이월금 15,958,775,24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642,810,42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4,103,795,97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64,103,795,97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1,488,739,500원

• 사고이월 29,846,554,062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4,312,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개잉여금은 32,684,189,845원이다.

나.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9,693,80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10,001,93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822,601,000원(전년도 이월금 128,800,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741,689,170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1,668,312,767원으로서

지방제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668,312,767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8,312,267원이다.

2)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53,20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53,466,13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3,20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5,266,040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28,200,090원으로서

지방제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8,200,090원은 익년도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00,090원이다.

3) 세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6,05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58,61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6,05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8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58,6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658,610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개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게 잉여금은 658,610원이다.

4)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73,29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334,57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3,29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3,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4,334,57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44,334,574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개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게 잉여금은 44,334,574원이다.

5)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856,18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4,740,10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856,18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749,196,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5,544,1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5,544,100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8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게 잉여금은 24,159,100원이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0,778,9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9,565,44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0,879,903,520원(전년도 이월금 101,003,52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549,859,77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049,705,67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049,705,679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71,630,5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게 잉여금은 978,075,179원이다.

7)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616,30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951,85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16,30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61,000,000원이며,

8)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740,86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19,763,80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908,638,000원(전년도 이월금 167,777,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2,614,250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2,157,149,5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157,149,550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1,421,2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게 잉여금은 2,135,728,330원이다.

9)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916,46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7,759,19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16,46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7,602,630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156,56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56,565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게 잉여금은 156,565원이다.

10)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38,228,61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670,476,69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3,789,812,720원(전년도 이월금 15,561,194,72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0,862,346,8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808,129,8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2,808,129,850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53,739,500원

• 사고이월 10,804,766,83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59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7,033,520
원이다.

(단위 : 천원)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구 분 회 계 별	예산현액(A)	결						산		이	액			명	세
		세 입(B)	B/A	세 출(C)	C/A	이월액(D)	D/A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보 조 금 집 행 잔 액				
합	485,345,183	442,644,195	91	321,180,429	66	121,463,766	25		4,040,187	53,527,428	359,317		63,536,834		
일	186,786,859	190,897,589	102	133,537,619	71	57,359,970	31		2,551,447	23,680,875	275,004		30,852,644		
특	298,558,324	251,746,606	84	187,642,810	63	64,103,796	21		1,488,740	29,846,553	84,313		32,684,190		
소	91,932,460	74,701,519	81	56,898,375	62	17,803,144	19		1,453,740	10,876,397	25,397		5,447,610		
토지구획정리사업	20,879,903	4,599,565	22	3,549,860	17	1,049,705	5			71,630			978,075		
하수도사업	9,822,601	9,410,002	96	7,741,689	79	1,668,313	17				1		1,668,312		
주택사업	53,209	53,466	100	25,266	47	28,200	53						28,200		
새마을소득금고	16,056	16,459	103	15,800	98	659	4						659		
새마을소득특별저원	73,295	117,335	160	73,000	99	44,335	60						44,335		
의료보호	1,856,182	1,774,740	96	1,749,196	94	25,544	1				1,385		24,159		
영세민생활안정	616,302	481,952	78	461,000	75	20,952	3						20,952		
주차장	2,908,638	3,219,764	111	1,062,614	37	2,157,150	74				21,421		2,135,728		
경영수익사업	1,916,461	1,357,759	71	1,357,603	71	156							156		
지방양여금특별회계	53,789,813	53,670,477	99	40,862,347	76	12,808,130	24		1,453,740	10,804,767	2,590		547,033		
소	206,625,864	177,045,087	86	130,744,435	63	46,300,652	22		35,000	18,970,156	58,916		27,236,58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236,795	39,182,816	125	20,537,364	66	18,645,452	60		35,000	402,075	58,916		18,149,461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172,130,000	134,733,511	78	107,342,386	62	27,391,125	16			18,568,081			8,823,044		
통합공과금과장특별회계	3,259,069	3,128,760	96	2,865,685	88	264,075	8						264,075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회 계 별	구 분	세			세			출		익	년 도 이			월	액
		예산액(A)	결산액(B)	증△감	B/A	결산액(C)	증△감	C/A	계		영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		
합	당해 년도('93)	485,345,183	442,644,195	△43,082,985	91	321,180,429	△169,504,925	65	121,463,766	4,040,187	53,527,428	359,317	63,536,834		
	전	576,996,710	456,060,039	△120,936,671	79	374,142,053	△202,854,657	65	81,917,986	1,280,283	42,902,980	222,943	37,511,780		
	증	△91,651,527	△13,415,844	△77,853,706		△56,919,818	34,349,732		39,545,780	2,759,904	10,624,448	136,374	26,025,054		
	당해 년도('93)	186,786,869	190,897,589	3,728,753	102	133,537,619	△53,631,217	71	57,359,970	2,551,447	23,680,875	275,004	30,852,644		
일 반 회 계	전	172,457,939	155,096,310	△20,361,629	88	121,125,385	△51,332,554	79	30,970,925	1,280,283	17,561,887	178,778	11,949,997		
	증	14,328,920	38,801,279	24,090,382		12,412,234	△2,298,663		26,389,045	1,271,164	6,118,988	96,226	18,902,667		
	당해 년도('93)	298,558,324	251,746,606	△46,811,718	84	187,642,810	△114,873,708	62	64,103,796	1,488,740	29,846,553	84,313	32,684,190		
	전	404,538,771	303,963,729	△100,575,042	75	253,016,568	△151,522,103	63	50,947,061		25,341,093	44,165	25,561,803		
특 별 회 계	증	△105,980,447	△52,217,123	53,763,324		△69,332,052	36,648,395		13,156,735	1,488,740	4,505,460	40,148	7,122,387		

(단위: 천원)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회 계 별	구 분	합			계		반 회		계	별 회		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예산액(A-B)	일	예산액(C)	결산액(D)	증△감(C-D)	예산액(E)	결산액(F)	증△감(E-F)
	계	230,902,072	254,230,513	△23,328,441	△23,328,441	159,282,351	184,397,589	25,115,238	71,619,716	69,832,924	1,786,792	
①	지 방 세	79,715,227	81,466,541	△1,751,314	79,715,227	81,466,541	△1,751,314					
②	세 외 수 입	132,247,610	153,808,609	△21,560,999	70,658,704	92,956,089	△22,297,385	61,588,906	60,852,520	736,386		
	경상적세외수입	53,752,372	56,937,034	△3,184,662	44,442,851	51,545,752	△7,102,901	9,309,521	5,392,282	3,918,239		
	임시적세외수입	78,495,238	96,871,575	△18,376,337	26,215,853	41,410,337	△15,194,484	52,279,385	55,416,238	△3,181,853		
③	지 방 교 부 세	300,000	300,000	-	300,000	300,000						
④	보 조 금	18,639,230	18,655,363	16,133	8,608,420	9,674,959	△1,066,539	10,030,810	8,980,404	1,050,406		
	국 고 보 조 금	4,774,760	4,746,536	28,224	3,396,220	3,367,996	28,224	1,378,540	1,378,540			
	도 비 보 조 금	13,864,470	13,908,827	44,357	5,212,200	6,306,963	△1,094,763	8,652,270	7,601,864	1,050,406		
	계	278,352,818	190,435,991	87,916,827	186,420,358	133,537,616	52,882,742	91,932,460	56,898,375	35,034,085		
①	인 건 비	30,323,287	28,205,247	2,118,040	29,892,140	27,796,794	2,095,346	431,147	408,453	22,694		
②	물 건 비	26,294,543	21,583,030	4,711,513	24,076,187	19,484,922	4,591,265	2218,356	2,098,108	120,248		
③	경 상 이 전	23,376,562	20,418,700	2,957,862	23,145,851	20,218,757	2,927,094	230,711	199,943	30,768		
④	자 본 지 출	150,210,303	103,377,211	46,833,092	87,441,418	55,474,063	31,967,355	62,768,885	47,903,148	14,865,737		
⑤	용 자 및 출 자	4,493,751	4,342,200	151,551	792,400	792,400	0	3,701,351	3,549,800	151,551		
⑥	보 전 재 원	12,281	12,280	1	0	0	0	12,281	12,280	1		
⑦	내 부 거 래	11,282,631	10,428,485	854,146	8,014,158	7,746,591	267,567	3,268,473	2,681,894	586,579		
⑧	기 타	2,338,705	2,068,838	269,867	2,178,704	2,024,089	154,615	160,001	44,749	115,252		
⑨	예 비 비	30,020,755		30,020,755	10,879,500		10,879,500		19,141,255			

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회 계 명	세		세		출	세계잉여금	비 고
	예 산 액	결 산 액	예 산 액	결 산 액	결 산 액		
상수도 공기업	31,236,795,000	39,182,816,464	31,236,795,000	20,537,364,270	18,645,452,194		
중영개발 사업	172,130,000,000	134,733,511,400	172,130,000,000	107,342,386,470	27,391,124,930		
통합공과금과경사업	3,259,069,000	3,128,760,183	3,259,069,000	2,864,684,980	264,075,203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총 평]

- 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네번째로 실시한 '93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 감사위원 3명이 시 본청은 물론 산하 전 기관에 대한 1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을 예산서와 결산서, 장부 및 증빙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사·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상의 모든 개수는 일치하고 있고, 시 산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90~'92년도에 지적되었던 시의 세입세출결산 업무가 많은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향후 시정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그 중 예산집행상 불용액 발생문제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보다 계획제정, 합리제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성실한 집행을 통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회계장부 정리의 소홀 문제는 매년 나타나는 사항으로써 시 당국이 산하 기관의 모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친등기소에 출장하여 일부 부동산의 등기 이전에 따른 세입의 적정여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의 누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무관련 공무원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세수 누수방지를 위해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시 산하 각 사업소 및 각 동의 모든 회계 장부를 과거 어느때 보다도 면밀히 검사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의 중요성을 모두가 재인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됨.
- 끝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당국이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지방 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시의회에서도 각별한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됨.

'93.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 시립도서관

- 50만권을 비치 하여야 하는데 15만권 정도밖에 도서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관리원이 21명이 있어야 하는데 11명, 반수준 밖에 되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이 있음(도서를 도난당한다든지)

○ 노동복지회관

- 강사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각종 교양강좌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

○ 각 구 보건소 공통

- 각구 보건소 지하수 수질검사 요원이 절대 부족하여 제대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검사인원과 증속 검사장비가 더 있어야겠다.
하절기 전염병예방 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나 방역소독 인부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상태의 인부를 유지해 달라.
- 개월에 꼭 필요한 난방기기가 있어야 하는데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나 '94년 동절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개월 때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 농촌지도소

- 금년에 1개 시범단지조성 효과가 있음.
비 적과 시범단지 2개소 및 축산농가 지원이 필요하다.

○ 총 무 과(시민회관)

- 청정과 일용직을 26명에서 11명으로 감축하라고 하므로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많을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인원을 요함.

○ 상수도관리사업소

- 불필요한 차량이 주차 또는 출입하므로 상수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출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함.

○ 공원관리사업소

- 신설사업소로 인하여 시설부대비, 인원 문제가 절실히 필요한.

○ 통합공과금계

- '94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

○ 각 경찰서

- 부천시민의 치안과 직결이 되므로 시 예산을 주어야 할 관계규정은 없으나 각별히 필요한 경찰 지원예산은 요구사항을 틀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영개발사업소

-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겠음.

세입분야

1. 등록·취득세 수납부의 기재 및 관리부실

I 현 실태

○ 중여 이전에 대한 취득세 수납관리 부실

중여에 의한 이진동기의 등록세 수납 내역을 보존동기와 함께 기재함으로써 취득세 납부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취득세 미납자에 대한 부과조치가 누락됨.

○ 수납부 작성에 일관성이 결여됨

과세표준을 기재할 때 실제 취득가격과 조정가격(40% 감액)이 혼용되고 있으며, 취득세 납부일을 실제 금융기관 수납일이 아닌 시금고 점수일로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검토 및 가산세 검토에 혼란 발생

○ 등기종류별, 동별 구분기재가 부정확함.

○ 수납부상의 세금수납액이 정수부와 대조되지 않음.

수납부의 수납액이 일 또는 월 단위로 정수부와 대조되지 않기 때문에 수납부상의 등록세 수납자료 누락 및 그에 따른 취득세 검토 누락의 자체 검증이 불가함.

II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

○ 단순, 반복적인 장부기재 업무 축소 및 장부간 대사체계 구축 필요

현재 구청 세무과 요원들은 대부분이 일계표, 수납부, 정수부 등 단순한 현황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 과표검토 등은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단순, 반복적인 기본장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인원을 기계적인 현황관리에서 적극적인 세원 개발 및 관리로 전환시켜야 함.

수납부 등 기본장부 기록을 전산화하는 것은 program 체계도 단순하며, 일단 전산화 되면 관련 장부간 검토가 자동화되어 효율적인 과세자료 검토가 가능함.

○ 세무직 공무원의 확충 및 전문화 필요

현재 3개 구청의 세무과 인원은 모두 138명이며, 이중 일용직은 46명임.

일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정규직 역시 전문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보직순환에 의한 배치이므로 세부적인 세법지식 등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

각 구청별 정규 및 일용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청별	정규직	일용직	합 계	비 고
원미구	33명	18명	51명	
소사구	30명	17명	47명	
오정구	29명	11명	40명	
합 계	92명	46명	138명	

○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납부서를 OCR카드로 대체하여 세목별 수납부 작성 및 징수부 작성, 관리 등을 전산화해야 함.

2. 등록·취득세의 종과세 검토 부실

I 현실태

○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일자 관리 활용 부실

법인이 설립 또는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5배 종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의 증자등기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 수납 사실만 관리할 뿐 법인 설립, 전입일자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종과세 여부의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단위 : 건)

등기종류	총 건 수	기본과세	종 과 세	설립일자확인
법인증자	78	50	28	36

II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

- 법인의 증자등기 또는 부동산 취득등기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자와 전입 법인의 경우에는 전입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설립 및 전입일은 별도의 현황철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법인 설립일에 따른 등록세의 종과세 여부를 확인한 필요가 있음.

3. 등록·취득세의 과세표준 검토 미흡

I 현 실태

- 법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 검토 부실
-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입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법인 장부상의 취득가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에 기초하여 등록, 취득세가 징수되고 있음.
- 법인장부의 조사는 세무조사과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실적 부진함.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세금추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건 수	개	취 득 세	등 록 세	비 고
1분기	2	12,738,430	10,716,850	2,022,080	
2분기	25	85,971,390	37,275,270	48,696,120	
3분기	7	17,074,500	8,356,000	8,718,500	
4분기	1	9,113,860	2,473,560	6,640,300	
합 계	35	124,898,180	58,821,680	66,076,500	

II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

- 현재 등록세의 계산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존하고 있으며,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시에 구비서류가 법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수납 과정에서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함.
- 본청 세무조사과의 인원부족(총 6명)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개원의 세무직 근무년수)

근무년수	개	1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비 고
인 원	6	3	1	2	

○ 따라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시에 구비서류를 법정화 함으로써 세금 수납시에 과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함.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장부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4. 자금 운용의 효율성 결여

I 현 실 태

○ 93년말 현재 에·적금 등 만기 상품이 63.8%이며, 보통예금이 36.2%이다.

(단위 : 백만원)

상 품 명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정기에금	26	20,000	48.9%	
정기적금	9	4,100	10%	
환 매 채	1	2,000	4.9%	
보통예금	1	14,791	36%	
합 계	37	40,891	100%	

○ 에·적금의 경우 만기일의 관리가 부실함.

에·적금의 경우는 만기 전 해약시에 이자수입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 전 해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93년 각 월별 만기도래액을 분석해 보면 만기 금액이 특정월에 편중되고 있으며, 특히 기타 세입발생없이 자금집행이 필요한 1월의 경우에는 만기상품이 1건도 안배되지 않고 있음.

각 월별 만기도래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92 가입	285	0	30	40	27	40	78	55	0	15	0	0	0
'93 가입	210	0	0	0	0	30	20	20	20	40	80	0	0
합 계	495	0	30	40	27	70	98	75	20	55	80	0	0
자금배정계획	2,151	187	232	212	147	109	223	113	89	197	142	106	389

○ 예·적금의 만기 전 해지로 인해 이자수입의 상실 발생

예·적금 등 총 7건이 만기 전 해지됨으로 인해 약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음으로 해서 상실된 이자수입 금액이 약 2.6억에 상당함.

예금종류	가입일	만기일	해지일	금액 (억)	적 용 이자율	이자액(원)	이자상실액
정 기 적 금	92. 3. 30	93. 3. 30	93. 1. 18	40	2%	42,191,760	109,698,576
정 기 적 금	92. 4. 30	93. 4. 30	93. 1. 18	27	2%	25,602,720	59,633,002
정 기 적 금	92. 6. 30	93. 6. 30	93. 1. 18	18	2%	15,431,500	27,583,806
정 기 적 금	92. 7. 24	93. 7. 24	93. 1. 18	30	2%	18,801,310	30,552,128
정 기 적 금	92. 7. 31	93. 7. 31	93. 1. 18	25	2%	19,931,500	30,229,441
정 기 적 금	92. 9. 30	93. 9. 30	93. 1. 18	15	2%	8,150,680	7,946,913
정 기 예 금	93. 2. 20	93. 5. 20	93. 4. 20	20	2%	3,232,860	1,347,025
합 계				175		133,342,330	266,990,891

II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

○ 자금의 운용은 크게 유동성과 수익성의 2가지 속성이 조화되어야 함.

특히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보다는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따라서 자금계획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예·적금등의 상품의 활용시에는 그 만기일을 각 월별로 장기자금 계획에 따라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성과 함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만기 상품의 경우 매월별 만기 도래액을 관리하여 월별 만기 인출액을 장기 자금운용 계획에 조화시켜야 함 것임.

세출분야

1. 예산편성 운용의 부적정

○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별	예산액	불용액	%	불 용 액 내 역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식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계	154,674,953	16,074,743	10	5,575,041	3,840,812	794,893	4,480,886	927,593	455,518
본 청	99,353,513	9,410,310	9	1,978,969	3,081,283	697,630	2,568,659	905,597	178,172
원미구	24,144,600	2,744,805	11	1,494,663	387,036	28,805	700,238	7,624	126,439
소사구	19,689,546	2,680,499	13	1,319,766	268,340	44,276	918,575	10,038	119,504
요정구	11,487,294	1,239,129	10	781,643	104,153	24,182	293,414	4,334	31,403

○ 개선을 요하는 사항

- '93년도의 지방재정 운용은 그 기초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성 요인의 과감한 배제와
-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 '93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 운용하면서 각 기관 일부부서에서는 예산 미집행 및 상당한 집행잔액을 방치하였고 추경 시 예산삭감하여 주민약속사업과 숙원사업에 제투자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회계년도말까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결산 시기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은,
- 예산편성운용에 부적정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회계장부 출납정리 소출

○ 현 황

- 시 본청 : 각 실·과·소 일상경비 출납장부
- 구 청 : 각 실·과 일상경비 출납장부
- 동 : 일상경비 출납장부 및 도급경비 정리부

○ 개선을 요하는 사항

-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지정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동 규칙 제149조(장부 기재상의 주의)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 결의서의 근거에 의거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즉시 기재하여야 하며
- 회계년도 종료후 폐쇄기간에는 최종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지급내역부 정리는 “예산배부액란”과 “전도자금 수령액란”에 주사로 기재한 후 차감정리 최종마감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장부 매 장마다 마감후 누계를 “차입으로이월” “전입에서이월”등 기록유지함에도,
- 각 기관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은 업무 비숙으로 반납액을 흑색 및 적색으로 “지출”란에 기재하고 지출누계액과 합산하는 등 장부를 부실정리하였고,
- 한편 지급내역부상 예산과목별 정리하면서 “예산배부란”과 “지출원인행위란”을 일체 기록하지 않고 “전도자금 수령란”과 “지출란”만 기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여입조치 하고도 장부정리를 하지 않고 장부상 집행잔액이 방치되어 있는 등 회계장부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각 기관 회계부서(시: 회계과 경리계, 구청: 총무과)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교재작성)과 친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회계 전반에 대한 질서확립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3. 청소관련사업 추진소홀

○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관련부서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불 용 액	%	비 고
보건사회국 청 소 과	28,206,687	19,927,915	6,120,706	2,158,066	7.6%	

○ 개선을 요하는 사항

- 부천시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위와같이 편성 운용하였으나, 추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인천 쓰레기 매립장 운영부담금)은 예산액 200,000천원 중 67,400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32,600천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 공기업에 대한 위탁금(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과 김포 해안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025,527천원 중 2,002,83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022,692천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의 사

유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한편,

- 중등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중 2차분으로 411,291천원은 지출 원인행위후 절대 공기 부족으로 '94년도로 사고이원조치 하였으나, 잔액 438,709천원은 기타 부대비 소요에 대비하여 잔액관리 하다가 결산시기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 물품 구입비는 청소차량(14대)구입비로 예산을 644,000천원을 확보하고 이에따른 구입비로 447,110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96,889천원의 불용액으로 발생됨.
- 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잔액 총 2,158,066천원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고 불용액으로 판단 되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요구하여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운영되어야 할 것임.

4. 예산집행의 부적정

○ 현 황

관련기관	물품구매내역	수 량	계약금액	계 약	납품일자	지출일자	비 고
원미구청	켄압축기 구입 및 보관스텐용기 제작	1,005개	85,544,400원	'94. 12. 22	'94. 1. 31	'94. 2. 3	
소사구청	켄압축기 구입	27개	8,990,190원	'93. 12. 24	'94. 1. 25	'94. 12. 12	
"	토지거래계약서의 8종	130권	368,500원	'93. 12. 30	'94. 1. 6	'94. 1. 21	분할계약
"	토지가격조사대장인쇄	40권	105,600원	'93. 12. 30	'94. 1. 7	'94. 1. 21	"
"	수도권화보(7-12월)	150권	600,000원	'93. 12. 31	'94. 1. 6	'94. 1. 12	
오정구청	도로표지판정비공사	11개	27,528,600원	'93. 12. 30	'94. 2. 24	'94. 2. 8	

○ 개선을 요하는 사항

- 부천시 제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 관직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 시산하 대부분의 관서의 출납사무를 회계업무 보조자에게 담당토록 하므로써 제반 회계업무 미숙으로 소홀히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장부를 불실하게 정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으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4조(출납폐쇄기간)규정에 의하면 예산은 회계 년도가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예산 미집행 잔액에 있어서도 그 잔액을 계속하여 연도를 경과한 점

행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본 규정을 무시하고.

- 회계년도 말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간에 납품일을 정하고 예산집행 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관계부서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회계질서를 엄정 확립하여야 할 것임.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4. 11. 12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4. 11. 12
- 라. 상정일자 : 1994. 11. 15(제3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팔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천시 시립도서관조례중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와 부천시 시립도서관사용조례 및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합

○ 제명변경

- 당초 :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 변경 :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3. 질의 및 답변요거

- 없 음